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 승인 기간 단축 및 자체승인 범위 확대(안 제16조)

나. 산학연 주관 유형성과물 관리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에 따른 개발성과물(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활용·관리

부 칙

<제00000호, 2026. 0. 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성과물 기술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u>2개월</u>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 <u>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u>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동일한 최종사

⑦ (생 략)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 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2조에 따른 개발성과물</u> <u>(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u> <u>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u> <u>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u> <u>국가가 소유한 개발성과물로</u> <u>한정한다)에 대한 활용·관리</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416